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01
----------	-----

2019년 8월 29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1일, 최영주 의원(찬성자 12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9년 8월 29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영주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해발생시 초동 대처 등 지역에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난 2012.12.31.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, 시 관내 25개 구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을 회원으로 2013.12월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구성하였음.
-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

- 이에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 ■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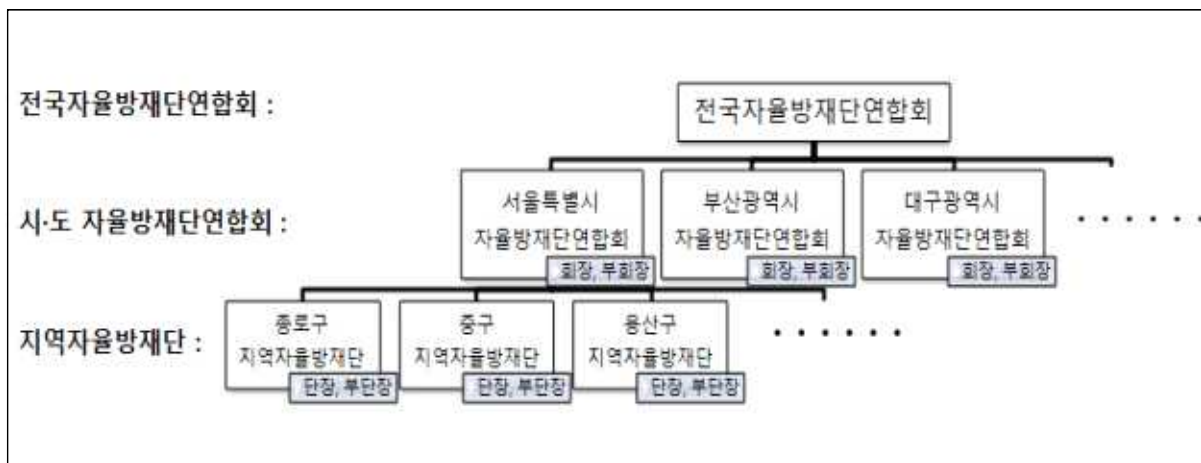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0조(지원) 서울특별시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■ 자율방재단연합회 현황

- 자율방재단연합회 체계를 살펴보면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 하위에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해당하는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가 있고, 그 하위에 자치구 차원의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이 있음.



[그림]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체계

-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‘법’) 제66조1)에 따

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·운영되며,

-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는 법 제66조의2<sup>2)</sup>에 따라 ‘지역자율방재단’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하고,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5<sup>3)</sup>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됨.
- 이 때 ‘지역자율방재단’의 단장 및 부단장은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원이 되며, ‘시·도 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장 및 부회장은 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회원이 됨.
- 한편,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된 회원 50명에 임원으로 회장, 부회장, 감사(2명), 사무총장을 두고 있음.

- 
- 1) **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**제66조의2(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)**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-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3) **제27조의5(전국연합회의 구성)**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해당 시·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(이하 "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"라 한다)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 이 경우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·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현황**

○ **설치 근거**

- 「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등
  - ▶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서 시·도 조례로 위임

○ **설치일자** : 2013.1.1. ※ 2기 출범 : '16.12.23~'19.12.23

○ **구성 및 기능**

- 구성인원 : 50명 (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)
- 임원현황 : 회장, 부회장, 감사(2명), 사무총장

직위	성명	소속
회장	김○○	강남구 자율방재단장
부회장	심○○	구로구 자율방재단장
감사	유○○	도봉구 자율방재단원
감사	이○○	광진구 자율방재단장
사무총장	라○○	강남구 자율방재단원

- **주요기능**

- ▶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- ▶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○ 참고로, 서울시 자치구자율방재단은 상황총괄반, 현장예찰반, 응급복구반, 장비지원반, 재난구호반, 홍보반 등으로 구성되며, 재난 대응관련 교육·훈련, 위험지역 예찰, 응급조치/복구, 주민 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([표] 참조).

[표] 서울특별시 자치구자율방재단 구성(2018년)

구 분	지역자율방재단 반별 현황							
	계	상황총괄반	현장예찰반	응급복구반	장비지원반	재난구호반	홍 보 반	기 타
서울	7,727	688	1,133	1,329	476	1,023	295	2,783

[표] 서울특별시 자치구자율방재단 활동내역(2018년)

구분	합 계		교육·훈련		위험지역 예찰		응급조치, 복구		주민대피 유도			기 타	
	횟수	참여 (명)	횟수	참여 (명)	횟수	참여 (명)	횟수	참여 (명)	횟수	참여 (명)	대피 (명)	횟수	참여 (명)
서울	3,402	50,971	245	8,584	1,865	17,972	66	749	3	47	53	1,223	23,619

## ■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예산 실비지원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

- 법 제66조제2항4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5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2012.4월 “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 계획(도시안전과-8034, ‘12.4.20.)”을 수립하여 민간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차원에서 2012년부터 ‘시민 안전문화 활성화’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[표] 참조).

4) 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5) 제65조(예산 지원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

[표]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지원내역

연도	사업(통계목)	금액	세부내역	비고
2012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947,150	· 워크숍 장소사용비 319,000 · 간담회 교육자료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비 360,000 · 간담회 다과비 193,100 · 조례제정 관련 인쇄비 75,050	
2013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4,263,600	· 회의운영비 550,000 · 발대식 초청장 제작비 372,800 · 발대식 축하공연 대금 300,000 · 활동자료 제작비용 2,200,000 · 발대식 다과구입 300,000 · 입원 위촉장 제작비 27,500 · 발대식 내빈 주차비용 66,000 · 발대식 행사 준비물품 구매비 397,100 · 발대식 초청장 배송비 50,200	
2014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1,051,100	· 회의운영비 492,000 · 현수막 제작비 72,600 · 교육여비 486,500	
2015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2,357,020	· 목간판 제작비 176,000 · 임시총회 현수막 제작비 66,000 · 임시총회 등 운영비 456,000 · 특강 강의로 230,000 · 특강 참석자 다과 구매비 461,020 · 특강 현수막 구입비 132,000 · 전문교육 강사료(2회) 440,000 · 간담회 운영비 396,000	
2016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3,080,000	· 정기총회 사무용품 구입비 104,000 · 정기총회 운영비 336,000 · 전문교육 강사료 2,640,000	
2017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2,138,000	· 정기총회 배너제작비 88,000 · 정기총회 책자 제본비 90,000 · 정기총회 다과비 420,000 · 양성교육 강사비 1,540,000	
2018	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(사무관리비)	2,310,100	· 정기총회 책자 인쇄비 151,800 · 정기총회 회의운영비 408,300 · 양성교육 강사비 1,750,000	

○ 따라서, 본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실비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며,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이 활성화되어 기후변화, 도시화 가속, 재난취약계층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

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질의) 자율방재단이 의용소방대 등 타 시민안전 활동단체들과의 활동 중복성이 있어 보임. 이에 따라 재해·재난 발생 시 대응훈련 야기 또는 대응효율 저하 가능성은 없는지?(김희걸

위원)

답변)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으며, 지역자율방재단은 태풍,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점검 및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나, 화재 발생 시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. 이와 같이 법정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임. 이러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.(김홍길 안전총괄관)

질의) 본 발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, 연간 1억 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서울시가 그간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해 왔던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?(정진술 위원)

답변) 서울시가 그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한 예산규모는 연 200~300만원 수준으로 연합회총회 개최비용 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해 왔음. 발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 자료는 안전총괄실에서 제공된 자료가 아니며,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됨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**6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7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**

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주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0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1일
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인호, 김진수, 김춘례,  
김태호, 김평남, 노승재, 안광석,  
이석주, 정진철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재해발생시 초동 대처 등 지역에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난 2012.12.31.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, 시 관내 25개 구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등을 회원으로 2013.12월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였음.
-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

- 이에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지원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           <p><u>제10조(운영세칙)</u>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</p>	<p><u>제10조(지원)</u> 서울특별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          <p><u>제11조(운영세칙)</u>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</p>

#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(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단, 제11조(운영세칙)는 현행 제10조(운영세칙)와 같은 규정으로 비용발생과 무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876,0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76,000천원으로 연평균 175,200천원임
- 추계전제
  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추계방법
  - 조례안 제10조(지원)에 “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데,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연간 활동 및 운영비 지원 단가를 ‘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’의 예산 요구사항 자료 반영하여 작성
  -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총 회원은 2019년 기준 자치구 25개의 단장, 부단장 포함 총 7,727명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구분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입	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비용 (조례안 제10조)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876,000
	소계(b)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876,000
□ 총 비용(b-a)	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175,200	876,000

○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 비용 = 876,000천원

- 총비용 =  $\sum_{i=1}^5$  (연간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지원 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 ~ 2024년)

- 연간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비용 = 175,200천원

·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현장 출동비 = 13,000천원

차량 임차료 45인승 10대 = 7,000천원, 식비 1인 2식대 18천원 X 25명 = 4,000천원, 사업수행비(4인 현장 운영비 = 500천원), 홍보비(현수막 5개 X 100천원 = 500천원), 방재물품비 = 1,000천원

· 서울시자율방재단 연합회원 워크샵 실시 = 15,000천원

· 서울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= 2,200천원  
회의장 임차료, 식대(1식 + 10,000원 \* 100명), 홍보비 = 1,100천원  
정기총회, 임시총회 1년에 각 1회 (1,100천원 X 2 = 2,200천원)

· 자치구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장비 및 운영비 지원 = 125,000천원  
자치구 장비: 고압세척기, 제설용 장비 X 25개 구 = 62,000천원  
자치구 운영비 지원: 단원, 사무실, 방재창고 등 = 62,000천원

· 서울시자율방재단 연합회 사무실 지원 = 15,000천원  
임차료(1~12월) 및 관리비

· 사업수행 활동비 = 5,000천원

상시근무조직 운영(서울시 재난상황실)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이수연

☎ 02-2180-7945

e-mail : sooyeon7@seoul.go.kr